

경기도 입법예고 제 2023-5010호

「경기도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내용을 「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3일

경 기 도 지 사

**경기도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**

1. 폐지이유

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‘경기도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’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이 조례를 폐지함

3. 자치법규안 : 별도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「경기도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(참조 : 평화기반조성과장, 주소 :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, 전화 : 031-8030-2366, 팩스 : 031-8030-2369, 전자메일 : imakjk@gg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경기도 조례 제 호

경기도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
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경기도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
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평화협력국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평화기반조성과장 윤하공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통일기반조성팀장 임철호
	담당자 성명·전화	지방시설주사 김재관(8030-2366)

□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제5조(6·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6·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및남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남북자와 남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
2.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해당 시·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남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9조(남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) ①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남북자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,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그 기간의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.

③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납북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⑤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를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진상조사보고서 작성)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경기도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 7. 19.] [경기도조례 제7466호, 2022. 7. 19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경기도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경기도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“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

1. 「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
2.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6·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기도지사가 되며, 부위원장은 행정(2)부지사가 된다. <개정 2018.10.1., 2022.7.19.>

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협력 업무담당 실·국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가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,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 등)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남북협력 업무담당 담당관·과장이 된다.

제8조(수당 등)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규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<2011.3.15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<제5934호, 2018.10.1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항 부터 (48)항 생략

(49) 경기도 6.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

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제3조제2항 중 “행정(2)부지사” 를 “평화부지사” 로 한다.
(50)항 부터 (52)항 생략

부 칙 (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<제7466호, 2022.7.19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㉔ 생략

㉕ 경기도 6·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
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평화부지사” 를 “행정(2)부지사” 로 한다.

㉖ ~ ㉚ 생략